



상소 양식: 자격 및 재인증

IBLCE는 IBCLC 자격자 및 응시자의 불리한 인증 자격 또는 재인증 결정 상소를 검토합니다. 불리한 결정은 다음 사유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: 1.) IBLCE에서 인증 또는 재인증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거나 2.) 실제적인 오류가 근본적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. 기한 초과는 합당하고 증명된 특별한 상황에 한해 상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모든 상소는 비자격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BLCE로 제출해야 합니다.

아래 명시된 대로 증빙 서류와 함께 다음 정보를 제출해 주십시오.

이름 (정자체 기재)

IBLCE ID 번호							
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주소

전화번호

이메일 주소

자격 정지에 관한 상황을 아래에 명시하고 모든 적용되는 사항에 표시하십시오.

- IBLCE가 인증 또는 재인증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음
 - 실제적 오류가 근본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침
 -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기한 초과
- 상소에 대해 짧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.



증빙 서류

모든 상소 시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 제공된 증빙 서류의 종류를 명시해 주십시오.

- IBLCE 요건(예: 교육 완료 증서)의 완료
- 비상 상황(제삼자 문서 필요)
- 상소를 뒷받침하는 기타 서류

약관: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, 본인은 IBLCE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.

서명

날짜

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해당 지역에 문의하십시오.

북미, 중미 및 남미 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경우 :

미주의 IBLCE

팩스: +1 703-560-7332

이메일: iblce@iblce.org

유럽, 중동(이스라엘 제외) 또는 북아프리카의 국가에 거주 시:

유럽 및 중동의 IBLCE

팩스: +43 (0) 2252 20 65 95 (오스트리아 내) • +43 2252 20 65 95 (오스트리아 외)

이메일: eumeoffice@iblce.org

아시아, 호주 또는 유럽 사무소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에 거주 시:

아시아 태평양 및

아프리카의 IBLCE

팩스: 07 5529 8811 (호주 내) • +61 7 5529 8811 (호주

외)이메일: apaadmin@iblce.org